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71020 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¹⁾ 1. ○○특별시 ○○구청장

2.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구합512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7.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5. 5. 13. 나머지 피고들 겸 항소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해당 피고들 겸 항소인들은 위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당 피고들 겸 항소인들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²⁾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수출입과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2) 제1심에서와 같이, 원고의 피고 ○○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2021. 4. 29. 위 피고에게 경정청구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기판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인 2021. 6. 30.이 그 간주경정거부처분일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고, 이 사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연구비 등의 이월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9.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 별지 1 목록 '경정청구액'란 기재 각 세액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연구비 등이 이월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별지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은 경정청구들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 ○○특별시 ○○구청장은 2021. 6. 18.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별지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피고 ○○특별시 ○○구청장은 원고의 경정청구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인 2021. 6. 30.이 간주경정거부처분일이 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9.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3.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6, 7행 및 제1심판결의 별지 4)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 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규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참조).

다. 따라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

판사 박○○

판사 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9

별지 1

목 록

(금액 단위 : 원)

순번	피고	처분일	경정청구세액
1	○○특별시 ○○구청장	2021. 6. 18.	4,027,360
2	○○특별시 ○○구청장	2021. 6. 30.	491,850



별지 2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금액 단위 : 원)

순번	피고	사업장	경정 청구일	처분통지 도달일	2015년 청구세액	2016년 청구세액
1	○○특별시 ○○구청장	A 주식회사 ○○지점	2021. 4. 29.	2021. 6. 18.	-	4,027,360
2	○○특별시 ○○구청장	B ○○점	2021. 4. 29.	통지 없음	491,850	-
합계					491,850	4,027,360



별지 3

피고 ○○특별시 ○○구청장의 처분사유

피고	처분사유
○○특별시 ○○구청장	<p>법인세 감면세액 10%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적용여부에 있어, ‘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수 신장’으로 들어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알 수 있음. 해당 건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개정 과세표준 적용기준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 단서에 법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도 “개정세법 시행 이후 과세기준일 등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15조와 같은 일반적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두5101 판결), 대법원은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 원인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일 뿐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두12552 판결 등 다수), 종전규정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를 신뢰하더라도 영구적 조세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일 뿐 마땅히 보호할 정도는 아님.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불승인 처리함.</p>